

대구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108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3. 12. 접수 제12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5. 접수 제376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1976. 11. 1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21. 4. 1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1) B은 2014. 7. 1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4. 7. 31.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B은 2015. 7. 3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5. 10. 2. 피고와 B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B은 2021. 3. 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3. 12. 접수 제12219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21. 3. 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5. 접수 제3761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동대구세무서는 2021. 5.경 B이 운영하던 이불 도소매업체인 ‘C’(2013. 6. 15. 개업하여 2021. 6. 30. 폐업하였다)의 2016년부터 2020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제기일 직전인 2022. 3. 3.을 기준으로 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64,620,860원이다(이하 B의 미납 세금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귀속 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	채납액	본세	가산금
2016. 1기	부가가치세	2016.6.30.	2021.6.30.	99,166,570	91,604,580	7,561,990
2016. 2기	부가가치세	2016.12.31.	2021.8.6.	101,860,570	94,754,050	7,106,520
2017. 1기	부가가치세	2017.6.30.	2021.8.6.	110,940,990	103,200,970	7,740,020
2017. 2기	부가가치세	2017.12.31.	2021.8.6.	78,375,680	72,907,660	5,468,020
2018. 1기	부가가치세	2018.6.30.	2021.8.6.	64,014,220	59,548,120	4,466,100
2018. 2기	부가가치세	2018.12.31.	2021.8.6.	92,122,730	85,695,610	6,427,120
2019. 1기	부가가치세	2019.6.30.	2021.8.6.	96,518,940	89,785,110	6,733,830
2019. 2기	부가가치세	2019.12.31.	2021.8.6.	121,621,800	113,136,590	8,485,210
2020. 1기	부가가치세	2020.6.30.	2021.8.6.	39,038,200	36,894,340	2,143,860
2020. 2기	부가가치세	2020.12.31.	2021.8.6.	11,024,570	10,377,540	647,030
2016	종합소득세	2016.12.31.	2021.8.12.	104,571,570	97,275,940	7,295,630
2017	종합소득세	2017.12.31.	2021.8.12.	131,990,880	122,782,260	9,208,620
2018	종합소득세	2018.12.31.	2021.8.12.	113,402,850	105,491,040	7,911,810
2019	종합소득세	2019.12.31.	2021.8.12.	99,971,290	92,996,580	6,974,710
			계	1,264,620,860	1,176,450,390	88,170,4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인 2021. 3. 4.경 이 사건 조세채권(2016년 ~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2016년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은 모두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그 범위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와 B의 혼인신고 기간이 약 44년 정도인 점, 분할대상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B의 사업소득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B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B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일인 2021. 3. 4. 무렵 ① B의 적극재산은 95,646,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지분, 5,872,189원 상당의 예금채권,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1,176,450,390원1), 금융기관 부채 87,993,873원인 사실, ② 피고의 적극재산은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지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2), B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은 소극재산인 채무 434,399,131원[{적극재산 395,646,000원(= 95,646,000원 + 150,000,000원 + 150,000,000원) - 소극재산 1,264,444,263원(= 1,176,450,390원 + 87,993,873원) = 1,106,968,733원} × 1/2,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따라 합계 245,646,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95,646,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지분 15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부부별산제 하에서, 피고와 B이 별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조세채무 등은 공동재산의 유지·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혀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와 B이 별거하였다는 2010년 이후인 2015. 7. 6.경 B 단독 명의이던 E아파트 F호를 매도하고, 2015. 7. 31.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5. 10. 2.경 피고와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이 2010. 3. 1.부터 경북 성주군 G에, 2015. 1. 13.부터 경산시 H에 각 주소를 두어 피고와 주소지가 다르기는 하나,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이 그 당시 사업과 관련된 창고 내지 공장에서 지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0년 이후에도 B이 운영하는 사업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와 B이 2010년 이후에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고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조세채무가 공동재산의 유지·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2010년경부터 B이 운영하는 사업소득으로 생활하지 않고 완전히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2015년경에 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5년경 취득 당시부터 피고와 B이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였는데, B의 1/2 지분이 다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2010년경 별거하다가 2021년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것이고, 당시 피고로서는 B의 재산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3. 12. 접수 제12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5. 접수 제376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별지

1) 2022. 3. 3. 기준 이 사건 조세채무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1,264,620,860원(= 본세 1,176,450,390원 + 가산금 88,170,470원)이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21. 3. 4. 기준 정확한 조세채무액수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부분인 1,176,450,390원은 인정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본세 부분만으로 계산하였다.

2) 피고와 B이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